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68,775,679	14,063,270
일반회계	432,540,183	12,976,205
특별회계	36,235,496	1,087,065
기타특별회계	36,235,496	1,087,065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704,000	21,1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1,090	18,333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064,447	61,933
성진강댐특별회계	10,000,000	300,000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4,544,671	136,34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76,988	518,3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300	31,029

제 2 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2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2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452,045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